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인 사람의
장기 기증 근거 마련〉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23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인 사람의 장기 기증 근거 마련 ...	3

I. 개요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3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6. 11.
- (3) 회 부 일 : 2024. 6. 12.

나.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을 이행하기 전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 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인 사람의 장기 기증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도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장기등 기증 희망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경우 담당의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완료된 후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기증기증자 등록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 ②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 이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u>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방법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43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자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뇌사자, 사망자만이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장기이식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대상인 사람도 장기기증 등록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환자 또는 그 가

죽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경우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도록 한 규정¹⁾에 예외 조항을 두어 장기등기증자 등록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²⁾’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가 장기기증 등록을 하려는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하는 절차 등을 의무화 하여 장기기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비율)
30세미만	396	521	564	536	534	636	3,187	(1.0)
30~39세	480	662	667	629	657	670	3,765	(1.2)
40~49세	1,627	2,203	2,267	2,264	2,341	2,263	12,965	(4.0)
50~59세	4,292	5,948	6,166	6,008	6,130	6,570	35,114	(10.7)
60~69세	6,634	9,793	10,959	11,756	12,734	13,589	65,465	(20.0)
70~79세	9,376	14,072	15,595	15,970	17,349	18,619	90,981	(27.8)
80세 이상	8,960	15,039	18,724	20,348	24,176	28,373	115,620	(35.3)
계	31,765	48,238	54,942	57,511	63,921	70,720	327,097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장기 기증 활성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심장사로 혈액순환이 멈춘 환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뇌사 판정 후 장기 기증과는 다른 개념이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으로 사망에 이른 후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입법목적임을 감안할 때, 장기등 기증 관련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장기등 기증 사실의 통보와 신고 등의 절차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즉시 이행에 대한 예외 조항만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동시에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임종기에 이른 환자의 장기기증 의사 결정을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장기이식과 연명의료중단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려는 환자 또는 가족이 장기를 기증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의 즉시 이행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것에는 동의하나, 장기기증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등 장기이식에 필요한 절차를 동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와 체계상 맞지 않으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법제처) 장기등 기증을 희망하여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장기등기증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요건이나 시기, 통지 등의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자”가 장기등 기증자 등록이 불발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시기 등에 대한 규정상 공백이 있어 보임

- (대한의사협회)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적출을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방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료윤리학회) 연명의료결정법의 중요한 원칙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임을 고려할 때 장기기증의 문제, 특히 순환정지후 장기기증의 경우는 의사결정능력이 명료한 시점에 상담과 의사표명이 이루어져야 함.

- 연명의료결정법에 새로운 절차가 삽입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연명의료결정관련 상담에 있어 당사자의 정보이해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 실질적인 변화(기증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입법은 현장의 혼선만을 초래할 위험이 높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이식의 대상과 연명의료중단 이행 대상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임종과정 판단 이후 장기구득을 위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시술을 지속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삶의 마무리에 대한 환자 본인의 결정 존중에 그 법의 취지를 두고 있으나, 장기이식의 경우 본인의 의사보다 가족 동의가 필수이므로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와 배치됨.

또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자의 연령분포 통계에 따르면 이행자의 83%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24.5. 기준)로서 대부분 암 등 질환 유병자로 추정됨을 고려할 때 장기기증 가능한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 볼 때 극소수의 장기기증 가능자 발굴을 위해 제도전반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현 장기이식법 체계 내에서 DCD 도입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DCD 관련 해외 사례
-------------	---------------------

□ 해외 장기기증 현황

(단위: 인구백명만당 장기기증자 수, pmp)

구분	'19년		'20년		'21년	
	뇌사	DCD	뇌사	DCD	뇌사	DCD
스페인	33.55	16.06	24.30	13.10	26.06	14.14
미국	28.62	8.26	28.29	9.74	29.23	12.65
영국	14.51	10.37	12.18	6.5	11.71	8.41
벨기에	19.78	10.52	12.33	8.87	15.40	11.7
네덜란드	6.13	8.80	5.85	9.06	5.75	10.12
스위스	11.70	6.70	11.2	5.80	12.5	6.6
프랑스	26.28	6.97	20.75	2.40	21.29	3.39

* 자료: 보건복지부

□ 국가별 DCD 관련 입법례

국가	내용	비고
네덜란드	인공호흡기 착용하지 않은 경우 <u>비가역적 심정지가 발생한 5분 후부터</u> 가능	장기이식법
영국	사망은 인공적인 대뇌순환의 <u>후속적인 회복이 없는 경우 5분간의 지속적인 심폐정지 후 확인</u>	영국이식협회가 정한 '순환사후 사망한 자로부터의 이식'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정
미국	① 순환과 호흡의 비가역적 정지 또는 ② 뇌간을 포함한 전 뇌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로 사망을 정의	통일사망판정법

* 자료: 보건복지부